재입학

- 학칙 제18조
- 세부 기준은 내규/재입학에 따른다.

본 내용은 <u>학사팀</u>의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안내 공지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바람

목차

- 1 재입학 안내
- <u>2 신청시기</u>
 - 2.1 제적된 학기로 재입학
 - 2.2 유급재입학
 - 2.3 월반재입학
 - 2.4 학업연장자
- 3 지원시 유의 사항
- 4 전형 기준
- 5 모집인원
 - 5.1 2020-2학기(서울)^[1]
 - 5.2 2020-2학기(ERICA)^[2]
 - 5.3 2020-1학기(서울)^[3]
 - 5.4 2020-1학기(ERICA)^[4]
- 6 합격 후 확인 사항
- <u>7 문의</u>
- 8 이슈 히스토리
 - · 8.1 2018. 10. 1
- 9 각주

재입학 안내

- 신청기간 : 2020.06.08(월) ~ 06.12(금) (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 기준이며 신청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)
- 신청자격 :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여 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을 취득한 후 학칙에 의거 제적된 학생. 단, 학사경고 제적자는 제적 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
- 전형기준: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학 학과(부)의 경우 제적 당시 등록차수가 많을수록 우선하며, 동일한 경우 제적 전 통산 평균평점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
- 신청방법: <u>HY-in</u> 로그인 → 신청 → 메뉴선택 (신청 > 학적변동 > 재입학신청) → 학년/학기 선택 → 저장 후 신청서출력, 서약서 출력 → 날인하여 서류제출

- 제출서류
 - 1. 재입학 지원서(HY-in 출력) 1부
 - 2. 서약서 HY-in 출력(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), 신분증
 - 3. 본인도장, 보호자도장(학사경고제적자만 해당), 신분증
 - 서약서에 날인
 - ※ 재입학 지원서 및 서약서에 날인한 경우 도장 지참 불필요
 - 4. 대리인 접수 시: 재입학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관계증명서류(주민등록 등·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서) 또는 위임장
- 제출장소 :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
- 합격자 발표: 단과대학별로 7월 중순~8월 초 개별 통보

신청시기

본인의 제적 시기를 기준으로 동일 학기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유급하여 학기 선택 가능하며, 월반은 동일 학년 내 학기 선택 시에만 허용

제적된 학기로 재입학

- 본인이 제적된 학기에 맞춰서 재입학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하며 1학기 재입학은 전년도 11월경에, 2학기 재 입학은 그해 6월경에 신청하여 진행
- 예시: 2018년 2학기 제적자가 2020년도에 재입하고자 함 → 2020년 2학기로 재입학 가능 → (2020년 6 월 재입학 신청기간에 접수)

유급재입학

- 유급 후 재입학 하려는 학기에 맞춰 직전학기 신청기간에 신청
-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(1회에 최대 8학기, 총 2회)하는 것
- 예시: 2018년 3학년 1학기에 미등록제적됨(2학년 2학기 성적까지 유효) → 3개 학기 유급하여 1학년 2학 기로 재입학 희망 (1학년 1학기 성적만 남김) →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(6월)에 신청

월반재입학

- 원하는 학기로 재입학하기 위해 1개 학기를 건너뛰는 것을 '월반'이라고 하며, 같은 학년 내에서는 가능하나 학년을 올려서 재입학할 수는 없음 (필수과목 배정 관련 사유)
- 예시 : 2학년 2학기까지 마쳤고 3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2학기로 재입학 (가능)
- 예시: 2학년 1학기까지 마쳤고 2학년인 상태에서 3학년 1학기로 재입학 (불가)

<u>학업연장자</u>

- 정규학기(8학기)를 마친 학업연장자의 재입학은 학기 구분 없이 신청 가능
 - 고지서 출력시기 : 수강신청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최종 수강신청 후 출력

지원시 유의 사항

- 1. 지원 횟수 재입학은 제적된 학과(부)에 한하여 2회만 가능하며,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2. **지원 조건** 재입학은 최소 한 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하고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 따라서 1학년 1학 기에 자퇴한 경우 재입학이 불가합니다.
- 3. 징계 제적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합니다.

- 4. 제외 대상 청강생, 초급대학 제적생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5. 지원서표기 재입학 지원서 출력시 정원내 학생은 '일반재입학원서', 정원외 학생은 '특례재입학원서'로 출력
- 6. 소속 학과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학과로만 가능합니다. 제적 당시 전공배정을 받지 못한 학부 소속인 경우 학 사 개편된 이력을 근거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(전공)를 선택할 수 있으나, 1학년을 마치고 전공배정을 받은 경 우에는 자진유급을 하여도 해당 학과(전공)로 재입학됩니다. 단, 컴퓨터공학부,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전 공 및 컴퓨터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로 재입학 가능합니다.
- 7. 자진유급 재입학과 동시에 자진유급(최대 8학기)은 가능하나, 월반은 동일 학년의 학기에 한정하여 가능합니 다. (학년을 올려서 재입학은 불가)
- 8. 계절학기 자진유급재입학자의 경우 신청화면에서 계절학기 성적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. 성적을 폐기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'계절학기 성적 폐기 확인서'가 같이 출력됩니다. (예: 1학년을 겨울계절 학기까지 이수하고 제적이 되었을 경우: 1학년 2학기로 유급재입학시 계절학기 폐기여부 확인)
- 9. 법학과 법학과 제적자의 재입학: 2012학년도 1학기부터 법학과로의 재입학은 모집하지 않으며, 법학과 제적 자는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또는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· 행정학과로 재입학 가능(재입학 후 전공변경 처리됨)

전형 기준

- 1. 재입학 신청인원이 여석을 초과한 학과(부)의 경우 제적 당시 '등록차수'가 많을수록 우선하며, 동일한 경우 제적 전 '통산 평균평점' 상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.
- 2. 합격자 선발과 신청 및 접수순서는 무관합니다.

소소

. .

모집인원

2020-2학기(서울)[1]

- 7	0 = -11	0 -	* 11	-ı
[가나다순] 경영대학, 경제금융대학, 공과대학, 국제학부, 사범대학, 사회과학대학, 산업융합학부, 생활과학대학, 예술·체육 대학, 음악대학 의과대학의예과 인무과학대학 자연과학대	335	72	407	의대, 사범대를 제외하고 학과, 전공 구별 없음 - 의학과 여석 없음 - 가호학부 2학기 모집 없음
즐겁대한 의과대한 의예과 인문과인대한 사업과인대				- 시오인무 /인기 무섭 없는

정워내 정워외 계

비고

 $\mathbf{m} =$

2020-2학기(ERICA)[2]

학, 정책과학대학

소속	정원내 정원외	비고	
공학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과학기술융합대학, 국제문화대학,	164명 38명	- 약학대학 여석 없음	
언론정보대학, 경상대학, 디자인대학, 예체능대학	총 202명	- 럭럭대럭 여석 없음	

2020-1학기(서울)^[3]

소쪽	성원내	성원외	Al	비ᅶ
[가나다순] 간호학부, 경영대학, 경제금융대학, 공과대학, 국제학부, 사회과학대학, 산업융합학부, 생활과학대학, 예술·체육 대학, 음악대학, 의과대학 의예과, 인문과학대학, 자연과학대학, 정책과학대학	11	66		간호, 의대를 제외하고 학과, 전공 구별 없음 (사범대 여석 없음)

2020-1학기(ERICA)[4]

소속

정원내 정원외 계 비고

공학대학,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과학기술융합대학, 국제문화대학, 52 26 78 의학대학 여석 없음 언론정보대학, 경상대학, 디자인대학, 예체능대학

합격 후 확인 사항

- 1. 계절학기 재입학자는 정규학기 개시 전 계절학기 수강 불가합니다.
- 2. **등록 필수** 재입학 합격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하지 않을 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입학 가능 횟수는 차감됩니다.
- 3. **증명서 발급** 재입학 등록 완료가 되어야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4. **등록금 고지서** 재입학 합격생의 <u>등록</u>은 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(1학기는 2월중, 2학기는 8월중)에 HY-in에서 출력됩니다. 단, 학업연장재수강자의 경우 수강신청 후 출력해야 함
- 5. **분할납부** 재입학자도 등록금 분할납부는 가능하나, 입학금은 1차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 (분할 납부 중인 경우 소정의 기한까지 미등록시 제적처리 됨)
- 6. 휴학 제적 전에 휴학한 기간도 전체 휴학가능 기간(3년)에 포함됩니다. 재입학을 허가 받은 학생이 일반휴학을 희망할 경우 등록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, 제적 이전의 휴학 년수와 합산됩니다.
- 7. **학사경고** 제적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재입학 후에도 유효하며,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첫 학기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강제유급 및 유급 휴학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

• 각 단과대학 행정팀

이슈 히스토리

2018, 10, 1

- 재입학시 기존에 불가했던 월반재입학(가능)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. 같은 학년의 경우 2학기로는 가능하나 학년이 올라간 1학기로는 불가. 다만 제적당시 보다 낮거나 같은 학년으로만 재입학 가능한 것은 동일하며 학 기를 건너뛰었다고 해당 학년의 필수과목을 면제받는 것은 아님.
- 복수전공자가 자진 '포기'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복수전공으로의 재입학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, 휴학 만료 제적과 같이 제적처리 된 경우가 애매했으나 이 경우에도 재입학 불가한 것으로 명시화 됨. 어차피 제적 됨과 동시에 일반 졸업하게 됨.

각주

- 1. ↑ <출처> 2020.05.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
- 2. ↑ <출처> 2020.05.12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
- 3. ↑ <출처> 2019.10.21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
- 4. ↑ <출처> 2019.10.24 대표홈페이지 광장 공지 학사